

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- 다만,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, 주요 대상이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,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함(안 제3조 및 안제5조제1항).
- 정책 사업에 대한 시장의 권고 사항을 삭제함(안 제7조 삭제).

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마련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마련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7조를 삭제하고,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<u>마련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마련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(이하 “개선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용·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오용·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마약류”이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(이하 “개선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

2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
3.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사업)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·보급
2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
3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
4.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